

의안번호	제345호
의결연월일	2021. 6. 11.

-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6. 1. 김태금, 이상우, 이승구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6. 4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6. 11.

제270회 예산군의회(제1차 정례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의원 : 김 태 금)

가. 제안이유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이 일부 개정되어 2021. 4. 21.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·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
-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(안 제4조)
-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함(안 제6조)
 - 청소년(24세 이하) 한부모 → 청년층(34세 이하) 한부모

3. 검토보고 요지 [전문위원 : 박 우 현]

- 본 조례안은 경제적·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등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-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조항을 명시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
-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르고 있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